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3나8460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3나84601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8. 8 선고 2023가소585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변론 종결 2024. 8. 29.

판결 선고 2024. 10. 10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8. 8. 선고 2023가소5858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1. 청구 취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그 중 8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2. 2. 16.부터, 2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2. 9. 20.부터,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가 피고 B에게 2009. 9. 23. 40,000,000원, 2012. 2. 16. 1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1954호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에서 2019. 1. 11. 40,000,000원의 대여금청구는 인용되고 10,000,000원의 대여금청구는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전 판결'이라 한다)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2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2. 가. 이에 관하여 원고는,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게 2012. 2. 16. 8,000,000원, 2012. 9. 20. 2,000,000원 합계 10,000,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전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들은 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 C은, 원고가 피고 C을 채무자로 특정하고 있을 뿐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·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소는 피고 적격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- 나. (1) 먼저 피고 C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

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(2)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.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는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 판결에서 10,000,000원의 대여금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급부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청구는 이유 없다1) .

3. 따라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권태관

판사장지혜

판사이영범

1) 한편으로 피고 B는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전 판결은 대여금청구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, 원고와 피고 B는 종전 소송에서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종전 소송에서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.